



대한민국 정부 인지
월
강남구세무서장
후납승인 2011년 9호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상품명 : 클래식 상환유예 ()
계약 번호 :

할 부 금 융 이 용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자택 주소					자택 전화				
	직장 명		부서/직위		직장 전화					
	직장 주소					휴대폰				
	기타 주소					우편물수령지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법인	E-mail			청구서	<input type="checkbox"/> 미발송 <input type="checkbox"/> 우편발송			
연 대 보 증 인 1 또는 공 동 계 약 자	공동계약자여부	본인은 할부이용자와 공동계약자임을 확인합니다.					(인)	(공동계약자일 경우에만 인감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할부금융 이용자와의관계			
	자택 주소					자택 전화				
	직장 명		부서/직위		직장 전화					
	직장 주소					휴대폰				
	기타 주소			E-mail			우편물수령지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보증채무한도	할부금융자금의 () % 상당액 (당사에 이미 보증한 금액이 있을 경우 별도 적용됨)					보증기간	개월			
연 대 보 증 인 2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할부금융 이용자와의관계			
	자택 주소					자택 전화				
	직장 명		부서/직위		직장 전화					
	직장 주소					휴대폰				
	기타 주소			E-mail			우편물수령지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보증채무한도	할부금융자금의 () % 상당액 (당사에 이미 보증한 금액이 있을 경우 별도 적용됨)					보증기간	개월		
차 량	차종	(년식)				최초등록일	년	월	일	
	차량번호			차대번호			신차 / 중고차	<input type="checkbox"/> 신차 <input type="checkbox"/> 중고차		
할 부 조 건	차량가격	원	등록비용	원		차량인도(예정)일	년	월	일	
	선납금	원	할부금융자금	원		할부기간	개월			
	회차	월 할부금			상환 대상 원금		할부 시작일	년	월	일
	(1)회~()회	결제일에 따라 일할 계산된 이자 금액 변동으로, 1회차 월할부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		할부 만료일	년	월	일
	()회~()회				원		이자율	연() %		
	만기시				원		실제연간요율	연() %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월 후납 원리금균등분할상환 <input type="checkbox"/> 만기일시상환(전액/일부)		할부금(총납부금액)			원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일로부터 ()개월 이내 상환 시 대출일로부터 ()개월 초과 ()개월 이내 상환 시 대출일로부터 ()개월 초과 후 상환 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원			
	금융기관	은행	계좌번호			초회납입일	년	월	일	
	예금주	(인)	예금주의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결제일	<input type="checkbox"/> 05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뒷장 자동이체약관을 준수하고 상기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할부금융이용자 및 연대보증인은 본 약정의 주요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약정을 체결 하였으며,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여신거래 기본 약관 및 할부금융약정서와 해당상품약관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거래조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우편으로 제공되는 핵심설명서를 제공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할부금융이용자

(인)

연대보증인 1 또는 공동계약자

(인)
연대보증인 2

(인)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프랭크 차네츠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층
(청담동, 신영빌딩)
www.vwfs.co.kr



매 도 인	딜러명/전시장			주소		
	판매 담당자	(인) 주민번호		-	연락처	
	금융 담당자	(인) 주민번호		-	연락처	
상기 내역이 사실임과 담당자의 입회 하에 할부금융이용자와 연대보증인에 의해서 직접 자필서명 및 날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부속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할부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할부금융"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채무자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 "할부금융자금"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 "할부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 및 이자 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매도인·채무자 및 금융회사의 성명 및 주소
-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등의 시기
- 이자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 불건가격, 할부금융자금
- 월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
-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

제4조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
- 할부금의 변제방법

제5조 (할부금융의 신청 및 지급위탁계약)

채무자가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6조 (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원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①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일로부터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② 채무자가 월 할부금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약정으로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8조 (기한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자동차의 약도,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채무자는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제9조 (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황)

①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할부금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할부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10조 (향변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매도인과의 자동차 할부매매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매도인이 자동차를 약정한 인도시기까지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가 제1항의 지급거절을 향변함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기로 하며, 금융회사에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 채무자는 제2항의 통지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하며, 금융회사가

향변사유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④ 채무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향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 인자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자세를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 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제12조 (담보의 제공)

금융회사는 약정서상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13조 (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14조 (채권의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결제방법)

- 금융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특약사항

자동이체 약관

- 채무자와 결제 계좌의 예금주 본인(이하 "고객"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폴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일 현재 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 순위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이체 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자동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해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여신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지·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 ①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할부금금융이용자·차주·할인 신청인·지급보증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시설 대여(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패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이 약관은 금융회사의 본·지점과 채무자(기업의 경우 본·지점 포함)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동으로 적용됩니다.
-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자등과 자연상환)

- ① 리스료·할부금·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식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채무의 이행을 원활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 2. 채무의 이행을 원활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그 율을 시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원료 전에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시장변경이 생긴 때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나 해소된 때에는 금융회사는 자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기로 합니다.
-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유통에 관한 금융회사의 인상·인하는 견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유흘,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자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유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 ⑥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이자 등과 자연상환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마체등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 ⑧ 제3항 및 제6항의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반송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4조 (비용의부담)

-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 2. 담보목적물 조사·주심·처분에 관한 비용
 - 3. 채무이행 자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
- ② 제행기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감고, 곧 감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감을 때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범위(現 연6푼)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감기로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여신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시설대여의 경우 리스료를 말함), 기한도달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5조 (지급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

-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제공된 담보물의 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곧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중당할 수 있도록 하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곧 감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물을 저축하기 10일전까지 담보제공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처분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④ 채무자(기업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를 합니다.

제7조 (연대보증인)

- ①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약정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의의없이 채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은 이 약관에 의한 채무가 완제될 때까지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③ 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위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이하 "권리")를 동 거래의 미변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합니다.
- ④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 ⑤ 연대보증인이 동의를 하거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로 동등한 자격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채무자의 일부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 해제 등,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금융회사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제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체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합니다.
 - 1.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입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암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척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입류를 시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암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암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척수가 있는 때
 - 3. 피산·회생·인가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차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 4. 조세회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또는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 5. 폐업·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 6. 채무자의 과정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 7. 채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 8. 여인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의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에 걸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니다.
 - 1. 이자 등 원금분할상환 형식의 리스로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로 한 때 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간 지체한 때
 -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요건이 충족한 때
-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사전으로 번체·입류·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합니다.
 - 1. 금융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번체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번체하지 아니한 때,
 -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암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입류·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 4. 제5조, 제22조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때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간 지체한 때
 - 5. 청산절차 개시·결손회사와의 합병·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휴업·관련기업의 도산·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문제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 6.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증·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증·금융질서문란방지·공공기기정보등 등록된 때
-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합니다.
 - 1. 제6조 제1항,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리스물건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험 기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지금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 또는 사설자금을 받아 설치·원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계약 하지 아니할 때
 - 4.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성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 ⑤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합니다.
 - 1. 제6조 제1항,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리스물건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험 기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지금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 또는 사설자금을 받아 설치·원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계약 하지 아니할 때
 - 4.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성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 ⑥ 제9조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 ① 제8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금융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제8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의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8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 ① 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 ②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체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④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1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에 경과하여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제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8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금융회사가 사전구상권에 의하여 제1항의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의 항변권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원채무 또는 구상채무에 관하여 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 후 차제 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차제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하되,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역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으로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태인에게 재당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범위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역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어음의 제시·교부)

-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원하지 아니하도록 되며, 어음의 반원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 ②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③ 제13조, 제4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④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로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로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정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점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나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경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기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비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④ 금융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정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 ① 채무자는 제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 ② 채무자가 제7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정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8조 (위험부담·면책조항)

-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감기로 하되,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감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 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④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증서 등의 인명·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더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곧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서면신고 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기지로 합니다.

제20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 합니다.

제21조 (통지의 효력)

- ①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경기변신고를 제작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③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2조 (회보와 조사)

-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부채현황·경영·업황 또는 웅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여,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는 그 재산·영업·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종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긍적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채무자는 제7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4조 (이행장소·준기법)

- ① 채무자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로써, 이를 알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하기로 합니다.
- ② 통지를 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금융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이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이 법에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이율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지방법원으로 합니다.